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두고, 발주자가 지정문화재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10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재청장은 소속 공무원인 설계심사관이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 지역별로 나누어 하게 하며, 문화재수리 현장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통건축의 부재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3(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로 한다.

제3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조의5(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6.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제3조의7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조의8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위원장(제3조의7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6부터 제3조의8까지의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7(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수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건조물의 수리에 관한 사항

2. 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 가운데 제1호 외의 것의 수리에 관한 사항

3. 보존과학분과위원회: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8(합동분과위원회)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조의9(소위원회)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제3조의10(전문위원)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가운데 일부를 문화재청에 상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11(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의1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

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의1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밖에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존처리 하려는 경우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변경사항 등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 중에 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함으로써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기법 및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33조의5에 따른 설계심사관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과 능력이 있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심사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
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가운데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과
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소속 기술직렬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교수요원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설계심사관이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 지역별로 나누어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내용과 중요도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등급을 구분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심사관의 인정 기준, 연수 과정 및 등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현장공개 시 유의사항)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을 공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공간과 관람동선을 분리할 것
2. 문화재수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급자와 협의하여 공개 방법을 정할 것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을 공개할 때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장을 공개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1. 중점공개 : 중요도가 높거나 문화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로서 주요 진행 과정을 공개. 이 경우 공개 범위 및 관람 방법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일반공개: 제1호 외의 것으로서 문화재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한된 범위만을 공개

③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안내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의5(정보공개 대상) 법 제37조의3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착수 전 현황사진
2. 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
3. 그 밖에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u>1. 법 제7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u>2. 법 제7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u> <u>3.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통건축의 부재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u>
<u><신 설></u>	<u>제3조의3(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신 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신 설>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조의5(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신 설>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
회(제3조의7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조의8에 따른 합동분과위
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위원장(제3조의7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
다. 이하 같다.)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알릴 수 있
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
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

<신 설>

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 제1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6부터 제3조의8까지의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7(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건조물의 수리에 관한 사항
2. 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 가운데 제1호 외의 것의 수리에 관한

<신 설>

사항

3. 보존과학분과위원회: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8(합동분과위원회)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신 설>

<신 설>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
선한다.

제3조의9(소위원회) ① 위원회, 분
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하
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
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
과위원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제3조의10(전문위원) ① 법 제4조
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
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

<신 설>

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관

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전

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위

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와 분과위

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

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

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

문위원 가운데 일부를 문화재청

에 상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

다.

제3조의11(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의1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
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
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

<신 설>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 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2. (생 략)
3. 동산문화재 분야
가. ~ 바. (생 략)

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의1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사. 그 밖에 동산에 속하는 문
화재를 보존처리 하려는
경우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사항은 따
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8조의2(변경사항 등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 중에 새로운 고
증자료 등을 확보함으로써 승
인받은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기법 및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33조의5에 따른 설계심
사관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심사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가운데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소속 기술직렬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교수요원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설계심사관이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 지역별로 나누어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내용과 중요도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등급을 구분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심사관의 인정 기준, 연수과정 및 등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

<신 설>

다.

제19조의4(현장공개 시 유의사항)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을 공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공간과 관람동선을 분리할 것
2. 문화재수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급자와 협의하여 공개 방법을 정할 것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을 공개할 때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장을 공개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1. 중점공개 : 중요도가 높거나 문화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로서 주요 진행 과정을 공개. 이 경우 공개 범위 및 관람 방법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일반공개: 제1호 외의 것으로

<신 설>

서 문화재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한된 범위만을 공개

③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2항
에 따른 안내자료를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의5(정보공개 대상) 법 제3
7조의3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착수 전 현황사진
2. 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
3. 그 밖에 문화재수리와 관련
된 정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481-4864